



2016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16. 10. 20.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관리국)

2016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의안번호	2016-6, 2016-7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6년 10월 20일 (목요일) 10:00 ○ 장 소 : 구청 지하1층 통합안전센터 내 회의실			
참석위원	○ 위 원 장 : 행정관리국장 ○ 내부위원 : 민원여권과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 외부위원 : 임규철, 주창범, 김지혜			
회의 진행순서	1. 개회선언 2.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소개 3.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방법 설명 및 심의 4. 폐회선언			
상정안건	연번	의안번호	상정부서	심의안건
	1	2016-6	취업지원과	「○○○○○○○ 및 ○○○○○○○○ 무료직업소 개소 승인자료」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의 타당성 여부
2	2016-7	「○○○○○○○ 및 ○○○○○○○○ 무료직업소 개소의 세입·세출자료, 접수 후 진행과정에 관련된 모든 자료(회원명부 외 다수), 감사 자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		

			의결내용
	연번	의안번호	
심의결과	1	2016-6	<p>각하</p> <p>○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획득하고자 하는 회원명부는 최초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정보로, 이의신청 제기 요건이 결여됨에 따라 각하</p>
	2	2016-7	<p>부분공개</p> <p>○세입·세출자료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판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p> <p>○회원명부(회원명단 및 회비납부명단)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명부 중 성명은 비공개로 하고 상호는 공개, 주소는 구까지만 공개</p> <p>○감사자료는 우리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정보부존재</p>

〈발언요지〉

□ ○○○ 감사

지금부터 「2016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첫 번째 안건은 「○○○○○○○ 및 ○○○○○○○○ 무료직업소개소 승인자료」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임.
- 두 번째 안건은 「○○○○○○○ 및 ○○○○○○○○ 무료직업소개소의 세입·세출자료, 접수 후 진행과정에 관련된 모든 자료(회원명부 외 다수), 감사자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 여부임.

□ ○○○ 위원장

지금부터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땡땡땡 - (의사봉 3타)

- 먼저 처리부서에서 상정안건의 취지 및 결정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람.

□ 처리부서

- 청구인은 ○○○○○○○○ 및 ○○○○○○○○ 무료직업소개소 승인당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주장하며 부서의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추가 정보공개를 요청함.

첫 번째 이의신청건은

- 청구인이 요청한 서류는 ○○○○○○○○ 및 ○○○○○○○○ 최초 승인자료이며, 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의 인적사항이 표시된 부분은 표출이 안 되도록 하여 부분공개 결정하였고,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부분은 비공개함.
- 청구인은 이에 이의신청 하였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최초 공개요청 내용과 다른 새로운 서류를 신청하였기에 이의신청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를 요청함.

두 번째로 추가 정보공개청구건은 3건이며

- 첫째, ○○○○○○○○ 및 ○○○○○○○○ 세입세출자료는 법인의 경영 정보로 회사 사업 활동에 있어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 해당함.

- 둘째, 청구인은 ○○○○○○ 법인회원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80%를 넘어야 한다고 하면서 전국 510,843업소의 회원명단 및 418,270업소의 회비납부명단을 요청한 바, 회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중 이름과 전화번호는 비공개로 하되, 업소명과 시군구까지만 표출된 주소를 부분공개 하고자 함. 단, 이 자료는 ○○○○○○ ○ 사업상 회원의 동의를 받은 회원들이므로 사업상 내부관리자료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어 공개해야할지 판단이 서질 않음.

○○○ 위원

- 뭐가 판단이 안 된다는 것인지?

처리부서

- 회원명부인데 회원의 동의를 받아서 작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서질 않음.

○○○ 위원

- 예. 알겠음.

처리부서

- 말씀을 드리자면, 회원명부는 저희한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은 서류임. 사실상 외부에 공개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함.

처리부서

- 셋째,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처음에는 허가 사항이었는데, 신고 대상 업종으로 바뀌어 감사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보부존재 처리하고자 함.

○○○ 위원

- 특별하게 재판이 걸려서 청구인의 어떤 이익이 침해 돼서 특별한 정보를 요구한다거나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청구한 것은 아닌 것 같음.
- 제 생각에는 기관에서 결정한대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함.

□ ○○○ 위원

- 당초 청구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이익신청한 것을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일지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해당 건은 공익 또는 권리구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 위원

- 회원 명단을 부분공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요?
- 주소를 봐도 우리구가 아니고 종로구로 되어있는데 이해가 안감.

□ 처리부서

- 회원 명부를 말씀드리면 전국 단위의 조직일 경우에 중앙회 본부를 둔 행정관청에서 관할을 하게 되어 있음.
- 회원 명부는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중앙회에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임. 명단을 받은 근거는 해당업자의 법인가입률 80% 이상 및 회비납부율 80%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민원인이 판단하기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80%라는 요건이 성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하며, 자기네가 만들어준 서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80%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명부를 달라 이렇게 된 것임. 그래서 이 명부를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했음.
-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건으로 해서 "○○○○○○에 무료직업소를 승인해준 것이 무효다."라는 건으로 해서 2014년도에 행정심판을 제기를 한 적이 있음. 행정심판 재결청에서 ○○○○○○에서 회원명부를 받지 않고 회계서류하고 이런 근거 서류만 받아서 처리한 것은 타당하다고 재결해준 재결서가 있음.
- 회원명부를 확인해야겠다고 해서 명부를 받았던 것이고, 사실 회원명부는 우리 구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아니고 임의로 받은 것임. 외부적으로 공개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로 보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것은 공개대상이 아닌 걸로 생각이 들기도 함.

○○○ **위원**

- 제 생각은 일단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 같음.
- 두 번째로 만약 이것을 공개한다면 상호는 괜찮은데 성명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 **위원**

- 신고 사항은 감사 권한이 없는 것인가요? 감사가 있는데 인력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건가요?

처리부서

- 권한이 없음.

○○○ **위원**

- 세입·세출표의 세부사항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것이니 안 되겠지만 개략적인 사항은 가능하다고 생각됨.

○○○ **위원장**

- 여기 세입·세출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나와 있음.

처리부서

- 세입·세출표는 영업의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음.
- 공개한다면 청구인이 원하는 회비에 대한 세입과 지출 이정도만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됨.

○○○ **위원장**

- 세부항목을 제외하고 총규모는 공개하자는 것인가요?

○○○ **위원**

- 청구인은 세입·세출표에 회비 총액이 기재되어 있으니 회원수로 나누어 납부율을 보기 위해서 공개해달라는 것인지?

처리부서

- 회비를 많이 내는 업체가 있고 적게 내는 업체가 있어 정확히 나누기가 어려움.

○○○ **위원**

- 정확하게 회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규모 자체를 공개하는 것도 공개 실익이 없음. 청구인의 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 **위원장**

- 그럼 아까 논의된 회원 명단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호명은 공개하고, 이름은 제외, 주소도 구까지만 공개하는 것이 어떠한지?

○○○ **위원**

- 회원명부를 우리가 관리할 의무가 있음? 굳이 없는 것을 받아서 공개해 줄 필요가 있음?

○○○ **위원**

- 원래 접수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부존재로 봐야하는 것 아닌지?

처리부서

- 이것이 조금 애매한 것이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과연 80%가 맞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명부를 받아서 확인해야 할 권한이 사실 있음.

○○○ **위원**

- 회원이 거의 50만 정도인데 이것을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그것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음. 협회에서 해온 것을 믿는 수밖에 없는 상황임. 구청에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가? 그건 할 수 없을 것 같음.

□ ○○○ **위원**

-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를 굳이 민간단체에서 받아서 공개해줘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 의문임. 정보가 없으면 없다고 정보부존재 처리하면 됨.

□ ○○○ **위원**

- 애매한 부분임. 근데 왜 80%가 있어야 되는 것임?

□ **처리부서**

-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음.

□ ○○○ **위원**

- 자료가 없다고 하면 좋겠지만, 근데 이 자료가 들어온 것을 그 사람이 알고 있다면 없다고 말해도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 **처리부서**

- 우리는 없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80%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것이 관건임.

□ ○○○ **위원**

- 그러니까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 **처리부서**

-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 하신대로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사실은 불가능함. 그래서 받으나 안 받으나 큰 차이는 없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행정심판 재결청에서 그 쪽에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은 취지로 그렇게 받아서 확인 함

□ ○○○ **위원**

-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음. 그리고 누구나 생각해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고 충분히 합리화 할 수 있음.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만약 공개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름하고 다 지우고 공개해야 될 것 같음

□ ○○○ **위원**

- 상식적으로 법이 잘못된 것 같음. 80%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 ○○○ **위원**

- 법적 미비사항인 것 같음.

□ ○○○ **위원**

- 아까 말씀하신대로 담당 업무 신고 서류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업무를 하다 보니 보유하고 있는 것임. 이것도 공개대상 정보가 됨.
- 내 권한이 아니더라도 업무와 상관없는 비업무 영역이라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정보공개 요구 대상이 됨. 핵심은 이제 공개대상이 되지만 6호에 나온 것처럼 사생활 보호라던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 함이 맞음.

□ ○○○ **위원장**

첫 번째 심의 안건은

- 위원님들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땅땅땅 - (의사봉 3타)

두 번째 심의 안건은

- 세입·세출자료는 비공개
- 회원명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성명은 비공개로 하고 상호는 공개, 주소는 구까지만 공개
- 감사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정보부존재

종합적으로 부분공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땅땅땅 - (의사봉 3타)